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2. .

국무위원 ○ ○ ○

(교육부장관)

1. 개정이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교육 취약계층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공립·사립 대안학교 포함(안 별표2, 측정항목1, 2)
- 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협의예정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령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을	전전년도 보수총액 ÷ 전전년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전문직원 1명당 임금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무직원 수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을	·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1명당 임금 · 사무직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무직원 1명당 임금
	공무원 ·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명예퇴직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전문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2. 학교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Sigma(\text{학교급별} \cdot \text{규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다.
	나. 학급경비	학급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급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7,466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학급당 6,600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6,619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6,423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3,959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 <u>대안학교(초등학교): 학급당 7,099천원</u> · <u>대안학교(중학교): 학급당 9,030천원</u> · <u>대안학교(고등학교): 학급당 8,702천원</u>
	다. 학생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생당 264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627천원 · 중학교: 학생당 651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66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799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특수학교: 학생당 1,177천원

				·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 <u>대안학교(초등학교): 학생당 905천원</u> · <u>대안학교(중학교): 학생당 1,192천원</u> · <u>대안학교(고등학교): 학생당 1,171천원</u>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선진형 · 16학급 미만: 50,000천원 · 16~23학급: 80,000천원 · 24학급 이상: 100,000천원 2) 과목중점형: 40,000천원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sum \{ \text{유형별} \cdot \text{규모(연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2의2에 따른다.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 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text{학교 수} \times \text{학교당 단위비용}) + (\text{학생 수} \times \text{학생당 단위비용}) + (\text{기준 교직원 수} \times \text{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 학교당 단위비용: <u>9,406천원</u> · 학생당 단위비용: <u>73천원</u> · 기준 교직원당 단위비용: <u>566천원</u>
	나. 지방선거 경비	지방선거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 (\text{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div \text{해당 시·도의 학교수}) \div \sum (\text{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div \text{시·도별 학교 수})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text{해당 시·도의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div \sum$	

		학생 수	(시·도별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left[\left\{ \left(\text{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div \text{해당 시·도의 전체 학생 수} \right\} \div \sum (\text{시·도별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div \text{시·도별 전체 학생 수}) \right\} \times 50\% + (\text{해당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div \text{전체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times 50\% \right]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수급자 수 × 10%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용 컴퓨터 지원액) +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수급자 수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액)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 장관이 충원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용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 연면적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3)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 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당 매입비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바. 삭제 <2019. 2. 26.>			
<u>사. 사립학교 이전(移轉)·증설비</u>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u>교부금산정 기준학교의 증설 교실 수</u>	<u>교실 수 × 단위비용</u>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u>

	<u>아. <삭 제></u>			
	자.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times \text{단위비용}) + (\text{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times \text{단위비용}) + (\text{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sum(\text{연령별 유아 수} \times \text{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times$ 단위비용	교육부장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text{유치원 수} \times \text{단위비용}) + (\text{원아 수} \times \text{단위비용})$	교육부장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삭제 <2015. 11. 5.>			
7.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times$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times$ 단위비용	교육부장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초등 돌봄지원	학급 수	학급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교실 수	교실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이 정하는 교실당 시설비
8. 고교무상교육 지원	가. 입학금·수업료	학생수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에 규정한 입학금·수업료

	나. 학교운영지원비	학생수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	학생수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9. 재정결합 보전	가. 지방채 상환	원리금 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	지원액	$[(\text{해당 연도의 해당 시·도의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div \sum(\text{해당 연도의 시·도별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 춤형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학 교	영재학 교	대안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급	162,093	53,816	342,859	241,810	448,381	248,093	18,168	448,430	728,703	22,449	542,002	-	380,172	518,026	501,342
5학급	177,453	65,583	-	-	-	-		-	-		-	-	-	-	-
6학급	185,636	74,171	387,573	265,423	490,410	273,805		496,698	846,745		584,000	611,028	411,875	552,012	540,843
7학급	193,131	-	-	-	-	-		-	-		-	-	-	-	-
8학급	202,755	-	-	-	-	-		-	-		-	-	-	-	-
12학급	-	-	449,883	-	558,283	-		594,497	1,316,433		671,877	1,224,644	454,470	606,764	603,627
18학급	-	-	510,976	-	642,296	-		662,901	1,804,109		758,741	1,358,962	510,976	665,452	662,901
24학급	-	-	567,322	-	688,030	-		719,098	1,939,273		817,111	1,555,068	567,322	702,123	719,098
30학급	-	-	650,924	-	739,410	-		767,497	2,441,934		864,050	-	650,924	741,680	767,497
36학급	-	-	703,149	-	799,520	-		856,790	2,740,815		901,286	1,829,225	-	-	-
42학급	-	-	752,377	-	876,211	-		925,797	3,127,713		936,472	-	-	-	-
48학급	-	-	802,478	-	921,766	-		970,767	3,239,796		980,633	-	-	-	-
54학급	-	-	843,517	-	956,649	-		1,008,000	3,589,394		1,017,838	-	-	-	-
60학급	-	-	898,950	-	-	-		-	-		-	-	-	-	-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240,000천원	270,000천원	300,000천원	330,000천원

나. 통폐합 기숙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300,000천원	400,000천원	450,000천원	500,000천원

다. 삭제 <2021. 11. 16.>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단위비용	1,000,000천원	500,000천원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 로 전환하려는 고 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2,0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3,50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5,0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 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15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30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0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8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 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25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50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10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0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1,500,000천원

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1) 운영비

학교 유형	학급수	단위비용	비고
가)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	(1) 18학급 미만	147,500천원	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운

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 는 고등학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88,000천원	영비를 지원하 는 경우 학급수 는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 적으로 하는 학 과로서 교육감 이 지정한 학과 에 설치된 학급 수로 산정한다
	(3) 27학급 이상	228,000천원	
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132,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68,000천원	
	(3) 27학급 이상	204,000천원	
다)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 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 등학교	(1) 18학급 미만	66,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84,000천원	
	(3) 27학급 이상	102,000천원	

2) 교육환경 구축비

학교 유형	단위비용	비고
가) 학과 내 학점제 운영 세부전공 과정을 개설 하려는 고등학교	(세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세부전공을 개설한 전체 학급 수) × 125,000천원	해당 과정을 개설하는 경 우 시설, 설비의 설치비 등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 한 비용은 최초 1회 지 원한다
나) 학과 내 학점제 운영 부전공 과정을 개설하 려는 고등학교	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125,000천원	
다) 교내에 설치된 공동 실습소에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개설한 학점제 운영 교 육과정 수 × 125,000천원	

사.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558,000천원	620,000천원	682,000천원

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교직원"이란 교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6. [2024년도](#)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7. 측정항목 제8호의 산정공식에서 교육청 부담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8.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u>교육감</u>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u>교육감</u>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u>교육행정기관의 장</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u>교육감</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현 행	개 정 안
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u>교육감</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u>교육감</u>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u>교육감</u>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2. 학교운영비	나. 학급경비	학급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급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7,466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학급당 6,600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6,619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6,423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3,959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2. 학교운영비	나. 학급경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유치원: 학급당 7,466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학급당 6,600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6,619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6,423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3,959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 <u>대안학교(초등학교): 학급당 7,099천원</u> · <u>대안학교(중학교): 학급당 9,030천원</u> · <u>대안학교(고등학교): 학급당 8,702천원</u>
	다. 학생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생당 264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627천원 · 중학교: 학생당 651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66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666천원			다. 학생경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유치원: 학생당 264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627천원 · 중학교: 학생당 651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66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666천원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충청 고등학교 학생당 799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특수학교: 학생당 1,177천원 ·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799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특수학교: 학생당 1,177천원 ·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 <u>대안학교(초등학교): 학생당 905천원</u> · <u>대안학교(중학교): 학생당 1,192천원</u> · <u>대안학교(고등학교): 학생당 1,171천원</u>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생략)	(생략)	· 학교당 단위비용: 9,738천원 · 학생당 단위비용: 63천원 · 기준 교직원당 단위비용: 552천원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학교당 단위비용: <u>9,406천원</u> · 학생당 단위비용: <u>73천원</u> · 기준 교직원당 단위비용: <u>566천원</u>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사. <u>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u>	(생략)	(생략)	(생략)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사. <u>사립학교 이전 (移轉) · 중설비</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u>학교 기숙사 시설비</u>	(생략)	(생략)	(생략)		아. <u><삭제></u>	<u>교부금산정 기준학교의 중설 교실수</u>	<u>교실 수 × 단위비용</u>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u>
9. 재정결함보전	가. <u>지방교육채상환</u>	(생략)	(생략)	(생략)	9. 재정결함보전	가. <u>지방채상환</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별표 2 비교

현행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습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3학급	162,093	53,816	342,859	241,810	448,381	248,093	18,168	448,430	728,703	22,449	542,002	-	
5학급	177,453	65,583	-	-	-	-		-	-		-	-	-
6학급	185,636	74,171	387,573	265,423	490,410	273,805		496,698	846,745		584,000	611,028	
7학급	193,131	-	-	-	-	-		-	-		-	-	
8학급	202,755	-	-	-	-	-		-	-		-	-	
12학급	-	-	449,883	-	558,283	-		594,497	1,316,433		671,877	1,224,644	
18학급	-	-	510,976	-	642,296	-		662,901	1,804,109		758,741	1,358,962	
24학급	-	-	567,322	-	688,030	-		719,098	1,939,273		817,111	1,555,068	
30학급	-	-	650,924	-	739,410	-		767,497	2,441,934		864,050	-	
36학급	-	-	703,149	-	799,520	-		856,790	2,740,815		901,286	1,829,225	
42학급	-	-	752,377	-	876,211	-		925,797	3,127,713		936,472	-	
48학급	-	-	802,478	-	921,766	-		970,767	3,239,796		980,633	-	
54학급	-	-	843,517	-	956,649	-	1,008,000	3,589,394	1,017,838	-			
60학급	-	-	898,950	-	-	-	-	-	-	-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안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습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대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급	162,093	53,816	342,859	241,810	448,381	248,093	18,168	448,430	728,703	22,449	542,002	-	380,172	518,026	501,342
5학급	177,453	65,583	-	-	-	-		-	-		-	-	-	-	
6학급	185,636	74,171	387,573	265,423	490,410	273,805		496,698	846,745		584,000	611,028	411,875	552,012	540,843
7학급	193,131	-	-	-	-	-		-	-		-	-	-	-	-
8학급	202,755	-	-	-	-	-		-	-		-	-	-	-	-
12학급	-	-	449,883	-	558,283	-		594,497	1,316,433		671,877	1,224,644	454,470	606,764	603,627
18학급	-	-	510,976	-	642,296	-		662,901	1,804,109		758,741	1,358,962	510,976	665,452	662,901
24학급	-	-	567,322	-	688,030	-		719,098	1,939,273		817,111	1,555,068	567,322	702,123	719,098
30학급	-	-	650,924	-	739,410	-		767,497	2,441,934		864,050	-	650,924	741,680	767,497
36학급	-	-	703,149	-	799,520	-		856,790	2,740,815		901,286	1,829,225	-	-	-
42학급	-	-	752,377	-	876,211	-		925,797	3,127,713		936,472	-	-	-	-
48학급	-	-	802,478	-	921,766	-		970,767	3,239,796		980,633	-	-	-	-
54학급	-	-	843,517	-	956,649	-	1,008,000	3,589,394	1,017,838	-	-	-	-		
60학급	-	-	898,950	-	-	-	-	-	-	-	-	-	-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u>자. <신 설></u>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u>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u> <table><tr><td><u>학급수</u></td><td><u>12학급 이하</u></td><td><u>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u></td><td><u>20학급 이상</u></td></tr><tr><td><u>단위비용</u></td><td><u>29,000천원</u></td><td><u>34,000천원</u></td><td><u>38,000천원</u></td></tr></table>	<u>학급수</u>	<u>12학급 이하</u>	<u>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u>	<u>20학급 이상</u>	<u>단위비용</u>	<u>29,000천원</u>	<u>34,000천원</u>	<u>38,000천원</u>
<u>학급수</u>	<u>12학급 이하</u>	<u>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u>	<u>20학급 이상</u>						
<u>단위비용</u>	<u>29,000천원</u>	<u>34,000천원</u>	<u>38,000천원</u>						
6. <u>2022년도</u> 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6. <u>2024년도</u> 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